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01호 2019. 6. 12.(수)

거창사랑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19-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2
제2019-63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제2019-768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 5
제2019-77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사전 열람공고 ····· 6
제2019-788호 공인 등록 공고 ····· 9
제2019-792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0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시 제2019 - 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거창군수 (인구교육과장)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하 천 명 (하천등급)		거창위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50번지 등 2필지		
	면 적	일시점용 : 2,880㎡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19년 6월 13일 ~ 6월 16일(4일간)		
	목적 및 사유	거창군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어울림마당 행사		

거창군 고시 제2019 - 6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5.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감악2길 172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74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2길 172	2009-04-01	2019-06-12	감악산 기슭에 있는 자연마을명에서 유래된 길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57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계수나무길 487-69	2009-04-01	2019-06-12	달속의 계수나무 모양이라 이름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21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상궁항길 50-21	2009-04-01	2019-06-12	마을 둘레의 산과 마을 복판을 가로지르는 개울이 활과 같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2-1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72	2009-04-01	2019-06-12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19-768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07.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6. 07. ~ 2018. 06. 30.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지산 A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9 -071호)	발전소명	지산 A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강 현 숙	김 찬 길
	소 재 지	경북 영주시 부석면 영부로106번길 6-8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23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582, 583, 584 (토지 위)	
	설비용량	98.42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9. 03. 25.	
	양수(예정)일	2019. 06. 07.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거창군 공고 제2019 - 77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사전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사전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19. 6. 10. ~ 2019. 7. 9.(30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대 상 지 : [붙임1] 참조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2] 참조
6. 이의신청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붙임3]를 거창군청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산림과)
(전화 055-940-3464, 팩스 055-940-3459)

7. 지정예정일 : 2019. 7.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 관한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이의신청서 1부. 끝.

별도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끝.

〔붙임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벌칙,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3〕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거창군 공고 제2019 - 788호

공인 등록 공 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2.

거 창 군 수

1. 등록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 6. 12.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민원사무전용 거창군수인	2.4cm×2.4cm	

거창군 공고 제2019-792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9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 미거주·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9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 6. 12. ~ 2019. 6. 27. (15일간)**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12일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2019년1기분(독촉분)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끝.